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9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정혜경·윤종오·전종덕

박해철 · 김준형 · 백승아

서미화 · 허성무 · 이재강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백화점·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 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 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저소득·근로자·5 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 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 2).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의제) ①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76 조의2에 따라 특허를 받은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면 세점(「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의제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를 "다음각 호의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당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을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과 설날 및 추석날 당일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1.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준대규모점포. 다만, 연간 총매 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 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전문점
- 3.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
-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 2. 복합쇼핑몰, 아울렛, 전문점: 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 3. 백화점, 시내보세판매장(「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4.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보세판매장: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8조의4(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제) ① 보세판매장(「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라 특허를 받은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면세점(「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법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의제되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 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 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 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 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1.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을 같다) 또는 준대규모점포.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대규모점포는제외한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장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 •전문점
- 3.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 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 까지
- 2. 복합쇼핑몰, 아울렛, 전문점: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10시까지
- 3. 백화점, 시내보세판매장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신 설>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
 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
 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생 략)

-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 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 시 30분까지
- 4.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보세판매장: 오후 9시부터 익일오전 8시까지
- ④ (현행과 같음)